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9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1.26.)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2.2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2.17.)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4.0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희석)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제18조 삭제) 이를 대체할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을 신설하며(안 제16조의2 신설),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u>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u>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u>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 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생략) 4. <u>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u> <u>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u> <u>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u> 5. 6. (생략)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 립) ① <u>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u> <u>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u> <u>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u> <u>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u> <u>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u> <u>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u> <u>(「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u> <u>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u> <u>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u> <u>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u> <u>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u> <u>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u> <u>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u>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 ----- ----- -----. 1. 2.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u>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u> <u>담하는</u> ----- ----- ----- <u>분담하게</u> ---- ---- 5.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 립) ① <u>제16조의2</u>----- ----- ----- <u>분담하게</u> ----- ----- ----- <u>분담한</u> ----- ----- ----- <u>분담함</u>----- ----- -----

현 행	개 정 안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¹⁾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이하 “집단에너지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운영하고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²⁾에 따르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주체가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³⁾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⁴⁾ 등 총 87개의 부담

1) 현재는 기존 공동주택 및 건물의 소유자, 신규 공동주택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부담금의 설치·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재정당국이 관리하며, 부담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사안임.

4)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금⁵⁾이 부과·징수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 중 일부가 부담금의 정의와 성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부담금을 일괄 정비하기로 하였고, 2024년 3월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총 32개(폐지 18개, 감면 14개) 부담금을 정비⁶⁾하려고 함.

그리고, 정부는 집단에너지 부담금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라는 단일 목적 이행을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비대상 부담금에 집단에너지 부담금을 포함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부담금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을 신설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 공급시장은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S

5)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서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되고 부과·징수할 수 있음.

6)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K E&S, GS 에너지 등 민간 기업도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어 현재 부과·징수하고 있는 부담금도 국가 재원이 아닌 기업회계에 편입되고 있으므로,

재정당국이 개별 기업의 영리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부담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담금 등의 형태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 공급시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도시가스사업의 사례를 보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징수⁷⁾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전부 위임

7)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부담금액,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부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부담의 방법, 부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 분담금과 같이 집단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유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건설비용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인데, 새로 부과되는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부칙 중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규율하는 대상에 사업자의 초과 부담금 부과 행위에 대한 업무개선명령을⁸⁾ 포함하는⁹⁾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 9) 개정안 시행 전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한 사실이 시행 후 확인되는 경우, 경과조치 대상을 “부담금의 징수”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 개정안 부칙에 따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법시행 전 초과 부담금 부과행위에 대해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사업자의 개정안 시행 전 초과 부담금 부과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개정안 시행 후에도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전의 규정으로 규율하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안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부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u> <u>① 사업자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 담하게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 의 부담 시 부담금 액의 산정기준, 납 부방법 등 그 밖에</u>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 <u>① (개정안과 같음)</u> <u>② 사업자가 제1항 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 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야 한다.</u> <u>1. 사용용도</u> <u>2. 용도별 부과 대 상 단위</u> <u>3. 단위당 기준단 가</u> <u>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u>

	<u>필요한 사항은 산</u> <u>업통상자원부령으</u> <u>로 정한다.</u>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8조에”를 “제16조의2에”로, “부담하는”을 “분담하는”으로, “부담하게”를 “분담하게”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18조에”를 “제16조의2에”로, “부담하게”를 “분담

하계”로, “부담한”을 “분담한”으로, “부담함으로써”를 “분담함으로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제20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 <u>1. 사용용도</u> <u>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u> <u>3. 단위당 기준단가</u> <u>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u>	<u><삭 제></u>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 (생략)

4.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5.·6. (생략)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1.·2.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제16조의2에-----
분담하는-----

분담하게-----

5.·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6조의2에-----

-----분담하게-----

금 중 사용자가 <u>부담한</u>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 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부담함으로써</u>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 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분담한</u>----- ----- ----- ----- ---<u>분담함으로써</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